

2023년 대비 법무사 2차 3순환 민사소송법

강의계획서

일정	2023년 8월 28일(월) ~ 9월 6일(수) (7회) 월, 화, 수 강의		
교재	2023 FORTUNE 법무사 민소법 핵심 암기장(각자 교재 가능) + 실전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제공) + 민소법 사례집(출간예정, 제공)		
강의 시간	시험 : 9:00 ~ 9:50, 강의 : 10:00 ~ 13:00, (연강)오후 2:00 ~ 5:30	강사	김 춘 환

법무사 민사소송법 최선의 선택 !!!

김춘환 민사법을 믿고 따라오시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 강사 소개

1.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Ph.D, 민사법 전공) 수료

前 月刊 考試界 기획위원

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사소송법)

現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과정 강사(민법, 민소법)

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現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인천대 법학과, 성신여대 법학과 특강 강사

現 월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전임교수

現 월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現 공단기 법원직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

2. 저서

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6판(2020), 학연 刊

Fortune 민법 (2021), 학연 刊

Fortune 민법의 종결 (2021), 학연 刊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 전정2판(2021), (주)월비스 刊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0판(2023), 학연 刊

Fortune 김춘환 법무사 핵심 암기장(2023, 신간), 학연 刊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민사법연구소, cafe.daum.net/chunzivilprozess

□ 법무사 2차 민소법의 특징

1. 판례 위주의 출제

현재 시점에서 법무사 민소법 문제의 특징은 중요 判例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출제하면서, 그 판례에 대한 쟁점을 문제로 삼아 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금 1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10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乙 회사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乙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乙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상고심의 환송판결은 중전 대법원판례와 상반되어 실질적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이 문제는 유명한 대판(전합) 1995.2.14. 93재다27,34(반소) 판례를 출제하였고, 그 쟁점은 재심의 소의 ‘대상적격’인 확정이 된 중국판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문제의 형식

그리고 문제의 형식으로는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목차를 달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I. 결론

甲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II. 이유

1. 문제점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이 된 중국판결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확정’된 ‘중국’ 판결인지가 문제 된다.

2.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중국판결인지 여부(대판(전) 1995.02.14. 93재다27·34)

원래 중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당연히 제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중국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견해와는 달리 대법원의 환송판결을 중간판결이라고 판시한 중전의 대법원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하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3.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중국판결”인지 여부

(대판(전) 1995.02.14. 93제다27·34)

재심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중국판결”이란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그것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통상의 절차로는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기관력이나 형성력, 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확정된 중국판결”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중국판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사건을 당해 심급에서 이탈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환송받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를 계속하게 되므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판결은 아니며, 또한 환송판결도 동일절차 내에서는 철회,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속력이 인정됨은 물론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급심에 대한 특수한 기속력은 인정되지만 소송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재판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 하여 보라는 중국적 판단을 유보한 재판의 성질상 직접적으로 기관력이나 실제법상 형성력,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이는 중간판결의 특성을 갖는 판결로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중국판결”이라 할 수 없다. 중국판결은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심급을 이탈시킨다는 측면에서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분명하지만 중국판결에 해당하는 모든 판결이 바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통상의 불복방법인 상소제도와 비상의 불복방법인 재심제도의 본래의 목적상의 차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따라서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중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중국판결이기는 하지만, 확정된 중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아, 甲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위 판례 중 밑줄 부분을 중심으로 자신이 이해, 암기한 내용에 대해 답안지에 ‘현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3. 공부방법

(1) 강사의 강의에 충실

현재는 법무사 문제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 강사분들이 출제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법원행정고시, 사무관승진, 서기보 시험도 출제를 담당하고 있다. 요즘의 추세는 서기보시험에 출제하였던 (객관식) 판례 등을 변형하여, 2차 형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강합니다. 특히 그 출제 판례에 대해서는 서기보시험에서 민사소송법 1위를 하고 있는 김춘환 강사가 누구보다 判例 등을 제일 잘 분석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강의를 잘 따라오면, 법무사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여도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핵심 암기장

다른 2차 시험에서도 상당한 적중도를 보였던 핵심 암기장을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관련 시험용으로 변형하여 출간을 합니다. 14년 이상의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책이니만큼, 법무사 시험에도 높은 적중도를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 사례집 출간

법무사,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용으로 2차 사례집을 8월 중반 정도까지 출간할 예정입니다. 학원에서 진행하였던 각종 모의고사, 다른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중요 사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꼭 보아야 하는 문제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적중도를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 논리전개 내지 논증의 틀(폼)

- (1) 이하의 내용은 제 대학원 지도교수님¹⁾의 글이니 민사소송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 (2)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는 문제에서 1.의의 2.취지, 근거, 법적 성질, 기능 3. 요건 4. 효과 식의 정형적인 폼이 있듯이, 사례문제에서도 그 사례문제의 성질에 따라 몇 가지의 폼을 미리 만들어 두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예:

1. 문제의 분석(문제점의 추출⇒논점의 문제제기, 문제의 소재)
2. 논점 전개
 - (1) 정의, 원칙, 예외(수정), 규범
 - (2) 문제로부터 요건정립, 취지, 논점의 결론, 반대설, 반대설 비판
 - (3) 전제, 이론적 귀결, 부당성 지적, 규범, 허용성, 특수성
3. 사안 적용 - 삼단논법의 귀결
4. 사안 해결 - 물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 긴요

5. 공부방법상의 유의점

- (1) 제도나 논점에 대해 왜(WHY?)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취지 등에 대하여 생각한다.
- (2) 유사한 제도나 논점의 상호 비교, 구별 표지 정확하게 이해, 아이덴티티 확립
- (3) 제도나 논점의 골격을 먼저 기억하고 거기에 공부가 더해 감에 따라 살을 붙혀 나감
- (4) KEY WORD 중심의 공부
- (5) 판례 태도 정확하게 기억(우리 판례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 (6)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말고(다침!!!)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7) 모든 공부는 결국 시험장에서의 답안작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평소 답안작성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책을 읽어나갈 때에도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하고(효율적인 마킹) 결과물을 간결하게 머리속에 정리해 두고 자주 되새김질을 한다.

1) 김○○, P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제43회·제48회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회수	일시	중요쟁점	교재
제1회	8/28(월)	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 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辨 34) 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 4.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辨 39) 5. 관할 -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勞 10회), 변론관할, 司 34, 50, 55, 勞 11회) 6. 이송결정의 구속력(司 41) 7. 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辨 40, 司 50, 54, 法 15, 勞 11회), 법인격부인] 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司 50) 9.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司 46,47, 法 13),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司 54), 제3자 소송담당(勞 1)과 채권자대위소송(司 39,41,43,48,53,54)]	~ p. 97
제2회	8/29(화)	10. 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辨 44) 11.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司 40) *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 심급대리원칙, 파기환송판결의 성질(司 37, 法 2022 기출) 12.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무권대리인(司 55) 13.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14.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司 54) 15.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司 43, 48, 法 14) 16.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法 13) 17. 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司 28, 41, 51, 53, 54)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무변론판결(司 45, 57) 18. 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司 53), 채권자대위소송(司 43, 54 法 12), 채권자취소소송(法 16) 19. 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辨 42) 20.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 p. 193
제3회	8/30(수)	21. 공개심리주의 - 영업상, 사생활의 비밀(司 53) 22. 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 56, 辨 44) 23. 채무부존재확인 소와 처분권주의(辨 44) 24. 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司 45, 49) 25. 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辨 41) 26. 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司 44, 5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司 47, 勞 10회),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여부(司 51, 57), 석명권(勞 11회) 27. 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과의 관계(司 51) * 적시제출주의, 이익권 *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 p. 290

		<p>28.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司 42, 48, 57)</p> <p>29.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辨 46)</p> <p>30.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辨 45, 司 56)</p> <p>31.소송행위의 하자과 그 취소 여부(辨 40, 司 51)</p> <p>32.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司 45, 47, 57, 法 13)</p> <p>33.무변론판결(司 45)</p> <p>* 추후보완제도, 송달(司 55)</p> <p>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司 54, 56)</p>	
제4회	9/4(월)	<p>35.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司 37)</p> <p>36.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司 50, 53), 현저한 사실</p> <p>*유일한 증거(辨 47)</p> <p>37.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司 50, 52, 勞 9), 서면증언의 특례(司 46)</p> <p>*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신설</p> <p>38.문서제출명령(司 47)</p> <p>39.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p> <p>* 증거보전(辨 46)</p> <p>40.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p> <p>41. 자유심증주의(勞 1)-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p> <p>42.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司 45)</p> <p>43.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멸(辨 39)</p> <p>44.소송종료선언(司 43)</p> <p>45.재소금지- 당사자동일((司 48), 소송물 동일의 문제</p> <p>46.재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司 52)</p> <p>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관력의 제한적 인정여부(司 39)</p> <p>48.화해권고결정</p>	~ p. 376
제5회	9/5(화)	<p>*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구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p> <p>49.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司 49, 勞 10회)</p> <p>5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관력의 시적한계(司 43, 49)</p> <p>51.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관력의 표준시</p> <p>52.기관력의 작용-선결관계(司 52)와 모순관계</p> <p>53.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辨 43, 司 52)</p> <p>5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辨 39)</p> <p>55.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辨 38, 司 56)</p> <p>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p> <p>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p> <p>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체책(司 40, 55)</p> <p>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체책과 실제법상 구체책(司 40)</p> <p>* 가집행선고, 소송비용</p> <p>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辨 43)</p> <p>* 선택적 병합 -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의 항소심법원의 판단(辨 46)</p>	~ p. 460

		<p>61. 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辨 46)</p> <p>62. 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司 46, 辨 46)</p> <p>* 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의 원칙(司 51회)</p> <p>63. 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p> <p>64. 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p> <p>65. 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p> <p>66. 중간확인의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p> <p>67. 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司 46)</p> <p>68. 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시의 조치</p>	
제6회	9/6(수)	<p>69.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증가공통, 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司 38, 45, 47, 53, 56, 勞 1)</p> <p>70. 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司 38, 45, 47, 52, 57, 勞 11회)</p> <p>7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司 46, 49, 53, 55)</p> <p>72.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司 49, 57)</p> <p>73. 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p> <p>74. 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된 선정의 인정여부</p> <p>75. 선정당사자-선정 후의 선정자의 지위</p> <p>76. 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辨 45)</p> <p>77. 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p> <p>78. 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司 50)</p> <p>* 공동소송참가(勞 10회)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司 48)</p> <p>79. 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司 51, 勞 9)</p> <p>80. 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p> <p>81.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p> <p>82. 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司 50)</p> <p>83. 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司 51)</p> <p>* 소송승계(당연승계, 특정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司 56)</p>	~ p. 540
제7회	9/6(수)	<p>84. 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p> <p>85. 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p> <p>86. 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司 44)</p> <p>87. 상소불가분의 원칙(司 51, 57)</p> <p>88. 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司 51)</p> <p>89. 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司 51)</p> <p>9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司 51)</p> <p>91. 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 55)</p> <p>* 특별항고(法 11)</p> <p>92. 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p> <p>93. 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p> <p>94. 간이소송절차(소액사건, 독촉절차)</p> <p>95. 공시최고절차</p>	~ p. 끝까지